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 제394호
- 다. 제출일자 : 1999년 10월 4일
- 라. 회부일자 : 1999년 10월 9일

2. 제안이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99.1.29)으로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수입증지 판매인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사용료 등은 수입증지로서 납부하도록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안 제3조)
- 나.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으로 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1962년 조례 제248호로 전문 개정된 후 2

차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99.1.29 개정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그 동안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2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서울특별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은 수입증지로서 납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 둘째,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조) 셋째,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의 100분의 3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 검토결과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제의 실시로 수입증지 납부대상 업무의 다양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그 동안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9조(수입증지의 교환)에서 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연인은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자연인도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어 수입증지의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환매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또한 수입증지를 출납, 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손·망실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변상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끝으로 부칙에서 규정한 종전 조례에 의하

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규정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경과조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 제401호
- 다. 제출일자 : 1999년 10월 5일
- 라. 회부일자 : 1999년 10월 9일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을 법인·개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5조)
- 나.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1조).
 - 폐지 :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여부, 관리계획 적정여부 등
 -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일반 시 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등의 경우
- 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안 제20조, 제23조의3, 제39조의2)
 -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 인정하는 공유재산
 - 제조업인 사업 또는 공장건설사업 ⇒ 사업

○ 공장용지 내의 재산 ⇒ 사업장 내의 재산

- 라.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안 제22조)
 -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 ⇒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
- 마. 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분할매각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 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사전에 정수토록 하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23조제2항)
 -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가격 ⇒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 사. 주거용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최저요율로 완화(안 제23조제6항)
 -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 1000분의 10
- 아.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최저 사용요율(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안 제23조제9항)
 -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 ⇒ 창업자 또는 개인, 단체, 법인, 기관 포함
- 자. 우리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1항)
- 차.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공개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